
- 2017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17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1건	주의 3 시정18		7,352,233		
1	○○○	2016~ 2017	강사로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2	○○○	2016~ 2017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주의				
3	○○○	2015~ 2016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6,000		
4	○○○	2016~ 2017	사망장애인 등록증 반납 및 회수 업무소홀	시정				
5	○○○	2017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1,101,000		
6	○○○	2017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693,000		
7	○○○	2015~ 2017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90,264		
8	○○○	2015~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950,000		
9	○○○	2016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16,800		
10	○○○	2017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11	○○○	2017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03,750		
12	○○○	2015~ 2016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누락	시정	환급	811,810		
13	○○○	2017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2,332,000		
14	○○○	2017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288,000		
15	○○○	2015~ 2017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시정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16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35,000		
17	○○○	2015~ 2017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42,535		
18	○○○	2016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추징	72,034		
19	○○○	2017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누락	시정	환급	328,040		
20	○○○	2017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253,000		
21	○○○	2017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19,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내역

지급일자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원)	징수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7건		1,530,000	61,200	6,120
2016.12.23	평생학습대학(****)	***	160,000	6,400	640
	평생학습대학(****)	***	240,000	9,600	960
2016.12.23	은빛학교(****)	***	160,000	6,400	640
	은빛학교(*****)	***	250,000	10,000	1,000
2017.4.25	은빛학교(****)	***	240,000	9,600	960
	은빛학교(****)	***	240,000	9,600	960
	은빛학교(****)	***	240,000	9,600	960

2.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 및 84조에 의하면 강사료에 대한 과세근거로서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으로써 최소 25만원을 초과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대학 및 은빛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정금액(25만원)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총 7건 1,530,000원에 대한 세액 67,320원(소득세 61,200원, 지방소득세 6,12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도	납입 지연 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16건	368,100				
2016	13건	328,200	불입참조	***	불입참조	
2017	3건	39,900	"	"	"	

※ 세부내역 불입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02.16부터 2017.05.11까지 체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16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기한 내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16건	368,100				
1	16.02.16.	19,800	16.02.18.	***	1	
2	16.03.07.	19,400	16.03.09.	”	1	
3	16.03.21.	26,900	16.03.23.	”	1	
4	16.04.14.	34,700	16.04.18.	”	1	
5	16.04.18.	37,400	16.04.20.	”	1	
6	16.04.20.	10,000	16.04.22.	”	1	
7	16.04.22.	8,600	16.04.26.	”	1	
8	16.05.02.	25,400	16.05.04.	”	1	
9	16.05.09.	13,300	16.05.11.	”	1	
10	16.05.17.	23,200	16.05.19.	”	1	
11	16.06.16.	31,300	16.06.20.	”	1	
12	16.06.28.	47,100	16.06.30.	”	1	
13	16.08.16.	31,100	16.08.18.	”	1	
14	17.02.07.	12,600	17.02.09.	”	1	
15	17.04.06.	19,000	17.04.10.	”	1	
16	17.05.11.	8,300	17.05.15.	”	1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사망장애인 등록증 반납 및 회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반납 및 미폐기자 : 11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정지일자
계	11명			
1	***	19**.**.*	2017.07.04	2017.07.04
2	***	19**.**.*	2017.01.08	2017.01.08
3	***	19**.**.*	2017.04.04	2017.04.04
4	***	19**.**.*	2017.02.03	2017.02.03
5	***	19**.**.*	2016.10.11	2016.10.11
6	***	19**.**.*	2016.09.16	2016.09.16
7	***	19**.**.*	2016.10.08	2016.10.08
8	***	19**.**.*	2017.04.03	2017.04.03
9	***	19**.**.*	2016.11.14	2016.11.14
10	***	19**.**.*	2016.06.22	2016.06.22
11	***	19**.**.*	2017.04.03	2017.04.03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17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부당사용이 없도록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에서는 위 사망자의 장애인등록증(*** 외 10명)을 사회 복지 통합관리망의 장애인등록증 반납현황에 미등록 하였고 반환대상 장애인등록증을 폐기 조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반납·회수 등록 및 폐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 사망장애인 11명에 대한 장애인등록증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납 · 폐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6,000원

【제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1	1				16,000	
주민세 (재산분)	2016	**** (****)	*** **리 ***_*	1	16㎡	250	4,000	
	2015			1	16㎡	250	4,000	
	2014			1	16㎡	250	4,000	
	2013			1	16㎡	250	4,000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4건 16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16,000원을 징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101,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사	비고
*** 농로정비공사	'17.7.24	'17.7.26 ~'17.9.8	17,930	1,101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7.24.일 (주)** ***과 계약체결 시공 중인 *** 농로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콘크리트포장에 따른 레미콘 타설시 장비 진입이 가능한데도 현장여건상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1일 시공량을 50% 까지 감하여 적용함으로서 1,101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콘크리트표층 인력 시공량

- 현 적용분 : $Q=100\text{m}^3/\text{일} \times 50\% = 50\text{m}^3/\text{일}$
- 향후 조정분 : $Q=100\text{m}^3/\text{일}$

【처 분 요 구】

- 상기 현장의 경우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직접포설이 가능한 경우로서, 콘크리트(표층) 포설품의 적용은 위와 같이 적용하여 1,101천원 감액 조정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693,000원

【제 목】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 사 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 *리 농로포장 및 *** *리 다이크설치공사	'17.3.14	'17.3.15 ~'17.4.11	18,004	△ 693	****(주) ***	

2. 내 용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토록 재료의 수량, 단가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면밀히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시방서 등에 의거 성실히 시공에 임하고 최적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3.14.일. ****(주) ***과 계약체결 시공중인 ****리 농로포장 및 ****리 다이크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이크 설치 시공과정에 내측 유로폼(20m²)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 공사 준공검사 전에 정산 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693천원을 과다집행하고 준공처리한 바 있어 공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693천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공사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90,264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기준일	카드번호	TOP적립 포인트	비 고
2017. 9. 14	4140-****-****-****	85,808	***
2017. 9. 14	9430-****-****-****	4,456	**출장소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및 ○○○○○에서는 2015. 9월부터 2017. 9. 15.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90,264원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90,264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95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 고
2015 ~ 2017	10	7	3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

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 관리용역’ 등 10건을 시행(계약)하면서 지역개발채권 950,000원을 미소화하고, 35,000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95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2016~2017)

연번	계약일자	적요	채주	지급액	소화채권액	정당채권액
계		10건			미소화 950,000원 추가소화 35,000원	
1	2016. 1. 6.	2016년 ***** 관리 용역	**주식회사	13,861,440	-	345,000
2	2016. 2. 18.	행사용 의자 구입	*****	1,056,000	-	15,000
3	2016. 3. 9.	**** 도로확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	****	8,862,000	230,000	220,000
4	2016. 3. 16.	**** 도수로 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	15,334,000	395,000	380,000
5	2016. 6. 30.	****(노인회관 주변) 정비 공사	****(주)	5,200,000	140,000	130,000
6	2016. 10. 31.	****(***) 도수로정비 공사	****(주)	19,773,000	475,000	490,000
7	2017. 1. 5.	2017년 ***** 관리 용역	**주식회사	15,537,480	-	385,000
8	2017. 1. 6.	2017년 *** ** 및 *** 무 인경비용역 계약	*****	3,600,000	-	90,000
9	2017. 1. 13.	1월분 소방안전관리 대 행료	*****	2,640,000	-	65,000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6,800원

【제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16,800	
***** 지침 교육 참석	***	2016.5.2	원주	70,000	64,400	5,600	1일
***** 회원 연찬회 참석	***	2016.6.7 ~ 6.9	원주	250,000	244,400	5,600	2박3일
***** 상반기 교육 참석	***	2016.6.17	원주	70,000	64,400	5,600	1일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효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지침 교육 참석’ 등 총 3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통비를 정당액보다 16,800원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16,800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민원사무처리 지연 현황 : 급수공사 신청 등 6건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신청인	담당자	처리구분	처리기한	처리일시
1	201742400 430000054	2017-01-17	17:37	진정	***	***	해결	2017-01-25 18:00	2017-01-26 09:20
2	201742400 430000087	2017-02-02	09:31	급수공사 신청	***	***	해결	2017-02-07 09:30	2017-02-09 08:56
3	201742400 430000107	2017-02-14	10:20	급수공사 신청	***	***	해결	2017-02-17 10:19	2017-02-20 10:24
4	201742400 430000108	2017-02-14	10:36	급수공사 신청	**** *****	***	해결	2017-02-17 10:21	2017-02-20 10:24
5	201742400 430000486	2017-06-19	14:33	급수공사 신청	***	***	해결	2017-06-22 14:28	2017-06-23 17:45
6	201742400 430001011	2017-08-11	16:3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해결	2017-08-14 10:28	2017-08-16 14:56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등 총 6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한 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시스템 입력소홀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시 관련 법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03,75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주민세 (재산분)	2017	1	1	1	415㎡	250원	103,750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2017년분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104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103,750원을 징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5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811,810원

【제 목】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망자 기초연금 미지급 현황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신고 내역			미지급액
				신고인	관계	신고일	
계	4명						811,810
1	***	*****	2015.09.18	***	자	2015.09.21	202,600
2	***	*****	2016.01.04	***	자	2016.01.08	202,600
3	***	*****	2016.02.09	***	자	2016.02.12	202,600
4	***	*****	2016.10.20	***	자	2016.10.24	204,010

2. 내 용

기초연금법 제15조 및 보건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월 사회복지과에서는 읍·면·동장에게 기초연금 지급 내역을 통보 하면서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망자에 대하여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에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사망자 4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미지급 청구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사망자 4명의 미지급된 기초연금 811,810원의 청구 신청 안내 조치 등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332,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2건				△2,332		
*** 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	'17.08.23	2017.08.28. ~ 10.11.	16,146	△1,225	(주)**** ***	
**** 배수로설치공사	'17.08.24	2017.08.28. ~ 10.11.	15,642	△1,107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08.23.일 (주)**** **과 계약체결 시공 중인 ***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콘크리트포장에 따른 레미콘 타설시 장비 진입이 가능한데도 현장여건상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1일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하고, 또한 토공작업에 투입되는 백호우에 대하여 현장여건상 0.7m³급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0.2m³급의 장비로 사용토록 설계서를 작성함으로써 1,22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2017.08.24.일 ****(주) **와 계약체결 시공중인 **** 배수로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토공작업에 투입되는 백호우에 대하여 현장여건상 0.4m³급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0.2m³급의 장비로 사용토록 설계서를 작성함으로써 1,10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 콘크리트표층 인력 시공량

- 현 적용분(현장여건상-불량) : $Q=100\text{m}^3/\text{일} \times 50\% = 50\text{m}^3/\text{일}$
- 향후 조정분(현장여건상-양호) : $Q=100\text{m}^3/\text{일}$

○ 토공작업 투입장비

- 현 적용분 : 백호우 0.2m³급
- 향후 조정분 : 백호우 0.7m³급

□ **** 배수로설치공사

○ 토공작업 투입장비

- 현 적용분 : 백호우 0.2m³급
- 향후 조정분 : 백호우 0.4m³급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건설공사 2,332천원에 대하여 감액 설계하는 등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88,000원

【제 목】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 석축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2017.08.23.	2017.08.28. ~ 10.11.	19,665	△ 288	****(주) ***	

2. 내 용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토록 재료의 수량, 단가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면밀히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시방서 등에 의거 성실히 시공에 임하고 최적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08.23. ****(주) ***과 계약체결 시공중인 **** 석축설치 및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기초부분의 시공과정에 내측 유로폼(9m²)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 288천원의 공사비가 과다 산출되어 있어 공사추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건설공사 288천원에 대하여 감액하는 등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현황(2007.01~2017.08. 존치기간 현재 기준)
 - 불입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현황

2. 내 용

「건축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존치기간이 도래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철거 등 조치를 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존치기간

이 완료된 불입 85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연장 등의 조치가 되지 않음은 물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에도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 「건축법」에 의거하여 85건 가설건축물의 철거 또는 연장 등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3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계약일자	적 요	채권자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 액
계		5건				미소화 추가소화	135,000원 210,000원
1	2016. 1. 4.	청사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임차비 지출	*****	2,131,200	-	50,000	50,000
2	2016. 2. 16.	제설장비 임차료	*****	1,210,000	-	30,000	30,000
3	2017. 1. 2.	청사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임차비 지출	*****	2,131,200	-	50,000	50,000
4	2017. 4. 17.	*** **통(***) 농로포장 및 개비온 설치공사	(주)**	9,972,000	455,000	245,000	-210,000
5	2017. 6. 28.	소하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	5,000,000	120,000	125,000	5,000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청사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임차용역’ 등 5건을 시행(계약)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35,000원을 미소화하고, 210,000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3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5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2,535원

【제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 고
계		42,535	
2017. 9. 19.	4140-****-****-****	32,958	BC TOP
2017. 9. 19.	9410-****-****-****	9,577	유류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 9월부터 2017. 9. 19.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42,535원 (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42,535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72,034원

【제 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계약금액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비 고
계	2건			72,034	
2016.05.09	** **통 *,*반 농로포장공사	****	4,890,000	24,890	** **통*반 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 동일 정산서 사본 제출
2016.12.08	*** **통 (***) 소교량 및 농로확장공사	****	9,350,000	47,144	미정산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통 *,*반 농로포장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보전비를 비교 정산 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하나 같은 시기에 ****에서 추진한 ** **통*반 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의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대가를 지출하는 등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의거, 미정산된 환경관리비 72,034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328,040원

【제 목】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망자 기초연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미지금액	비고
1	***	*****	2017.01.19	163,200	
2	***	*****	2017.05.10	164,840	

2. 내 용

기초연금법 제15조 및 보건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134~p136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월 사회복지과에서는 읍·면·동장에게 기초연금 지급 내역을 통보

하면서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망자에 대하여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그런데 ○○○에서는 2017년 사망자 2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미지급 청구 신청 안내를 누락하여 사망자에 대한 기초연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사망자 2명의 미지급된 기초연금 328,040원의 청구 신청 안내 조치 등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53,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 고
*** **통(***)도로 확포장공사	'17.05.31.	'17.06.05. ~'17.06.29.	11,773	△253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05.31. (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통(***)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토공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백호우)에 대

하여 현장여건상 백호우 0.7m³급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백호우 0.2m³급의 장비를 사용토록 설계서를 작성함으로써 253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토공작업 투입장비

- 현 적용분 : 백호우 0.2m³급
- 향후 조정분 : 백호우 0.7m³급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건설공사 253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는 등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19,000원

【제 목】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 **동(****)석축 설치공사	2017.05.24.	2017.05.30. ~ 06.16.	9,452	△119	(주)**** ***	

2. 내 용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지 여건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토록 재료의 수량, 단가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면밀히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시방서 등에 의거 성실히 시공에 임하고 최적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05.24. (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 통(****)석축설치공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천단부분의 시공과정에 천단 두께 10Cm를 시공하여야 하나 확인결과 두께8Cm만 시공하였으며 미시공 부분(두께 2Cm)에 대하여 119천원의 공사비가 과다 산출됨에 따라 공사 준공전 미시공분에 대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준공처리 함에 따라 공사추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건설공사 119천원에 대하여 감액하는 등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